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35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 용혜인 · 김성환 · 이수진

김재원 · 양부남 · 이해식

강경숙 • 이광희 • 박정현

전종덕ㆍ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군인·경찰·교직원공제회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조합원 권익 향상이나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타 법인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등록면허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이에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 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협동조합등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2조의5 신설).
-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57조의 2제11항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15 조 및 제115조의11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 조직변경한 협동조합등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직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등기와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 및 제57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22조의5(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 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⑩ (생 략)

<신 설>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60 조의2제1항 또는 제105조의2제 1항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 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 조 직변경한 협동조합등이 양수받 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직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등기와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 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